

1. 개정이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공급망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지원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급망 위기경보의 발령 절차,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업무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법·제도 운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개정된 법률·시행령 제명을 반영하여 수정(시행규칙 제명, 안 제1조, 제2조)
- 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 위기수준에 따라 품목별 위기
경보 발령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 다.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수행사업 구체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3, 제9조의4, 제15조의3)
- 라. 희소금속 시책수립의 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별표3의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각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령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사후에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심각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기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위기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경보 발령 및 위기경보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조치사항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의3(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법 제2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사업자의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공급망위기 관리에 대한 컨설팅

3.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무역거래 정보제공·중개 및 컨설팅
4. 해외 생산정보의 수집·제공 및 수입처 다변화 사업
5.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제공 등의 지원
6. 재고확대 지원을 위한 창고대여, 유지, 관리비 보조
7. 기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의4(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영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공급망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1의2호의 서식과 같다.

제15조의2(시책수립의 대상 희소금속)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희소 금속산업 경쟁력강화 시책의 대상이 되는 희소금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에 속하는 금속 원소를 말한다.

1. 알칼리족
2. 반금속
3. 철족
4. 보론족
5. 고용점 금속
6. 백금족
7. 희토류

제15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업무) 법 제37조의3제2항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희소금속 관련 산업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업무

2. 국내외 희소금속산업의 현황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업무

제15조의4(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희소금속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3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희소금속센터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희소금속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37조의3제1항 및 영 제59조의2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희소금속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16호의3서식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위기경보 발령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

위기 경보 구분	발령기준
관심	○ 특정 품목의 교역규모, 국제 분업구조, 중·장기 수급 여건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	○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망위기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	○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망위기 발생으로 관련 산업 전반의 공급망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각	○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망위기 발생으로 해당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련 산업 전반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서

1.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전화번호:
5. 지정 연월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국가회소금속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운영예정일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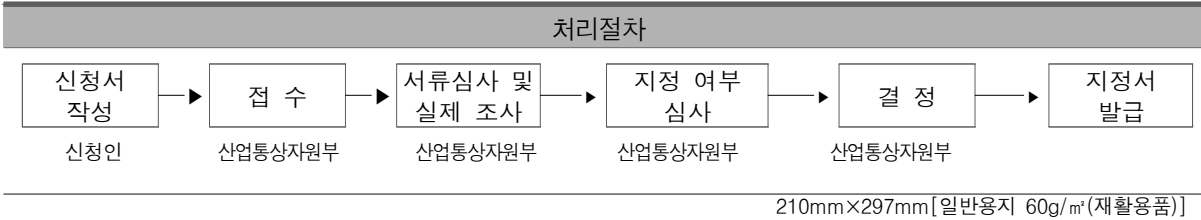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회소금속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호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서

명 칭:

소재지: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지정조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국가희소금속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소재 · 부품 · 장비산업</u> <u>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u>시행규칙</u>		<u>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u> <u>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u> <u>특별조치법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 ·		제1조(목적)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 · 부품 및 장비의 범		제2조(소재 · 부품 및 장비의 범		
위)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		위)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		
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		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		-----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 · 부품		-----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 ② (생 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		③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		
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		위한 특별조치법」-----		

2항 및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는 별지 제
2호서식과 같다.

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문
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업 확
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신설>

-----.

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

----- 한국산업기술기확평
가원장-----.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위기경
보는 별표3의 위기경보 발령기
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심각 이상의 위기경
보 발령 시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령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위
기경보를 발령하고 사후에 경쟁
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심각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기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위기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경보 발령 및 위기경보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조치사항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의3(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법 제2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사업자의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공급망위기 관리에 대한 컨

<신 설>

<신 설>

설텡

3.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무역
거래 정보제공 · 중개 및 컨설
팅

4. 해외 생산정보의 수집 · 제공
및 수입처 다변화 사업

5.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기업이 소유한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
는 경우 정보제공 등의 지원

6. 재고확대 지원을 위한 창고
대여, 유지, 관리비 보조

7. 기타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의4(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영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공급
망센터지정서는 별지 제11의2
호의 서식과 같다.

제15조의2(시책수립의 대상 희소
금속)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
라 희소금속산업 경쟁력강화 시
책의 대상이 되는 희소금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
는 다음 각 호에 속하는 금속
원소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1. 알칼리족

2. 반금속

3. 철족

4. 보론족

5. 고용점 금속

6. 백금족

7. 희토류

제15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업무) 법 제37조의3제2항제7호
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희소금속 관련 산업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업무

2. 국내외 희소금속산업의 현황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업무

제15조의4(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7
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희소금
속센터(이하 “희소금속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6
호의2서식의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신청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
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37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

력 및 시설 보유현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0;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회소금속센터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회소금속센터의 지정

을 신청한 자가 법

제37조의3제1항 및 영&#

16;제59조의2의 지정요건을 갖

추었을 때에는 회소금속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16호의

3서식 국가회소금속센터 지정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